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0가합610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보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수정

변 론 종 결 2022. 12. 1.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9. 8. 2. 체결된 3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62,224,91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2,224,9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2019. 3. 29.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9. 8. 2. 체결된

3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457,986,2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7,986,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1) B은 서울 강동구 C 대 504㎡ 및 그 지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동생 D와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9. 3. 26. 주식회사 E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21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B은 그 무렵부터 2019. 8. 1.까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한 1,236,309,719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고, 2020. 8. 1. 주식회사 E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 산하 구리세무서장은 2019. 12. 11. B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차 분납분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20. 2. 11., 1차 분납세액을 224,491,720원으로 결정하여 고지하였고, 원고 산하 노원세무서장은 2020. 2. 10. B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차 분납분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20. 4. 9., 2차 분납세액을 224,491,720원으로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4) B의 2022. 11. 29. 기준 체납액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이하 체납된 본세와 가산금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본세(원)	가산금(원)
양도소득세	2019년	2019. 8. 31.	2020. 2. 11.	204,491,720	58,396,190
양도소득세	2019년	2019. 8. 31.	2020. 4. 9.	154,491,710	45,991,330
합 계				358,983,430	104,387,520

나. B의 피고에 대한 수표 교부

1)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고, 그중 1억 5,000만 원을 2019. 3. 28. 지인인 F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B은 2019. 3. 29. F을 통하여 위 1억 5,000만 원을 수표(1,000만 원권 7매, 100만 원권 80매)로 인출 한 후, 같은 날 아들 G1)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위 수표교부행위를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라고 한다).

2) B은 2019. 8. 1.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806,309,719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2019. 8. 2. F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F을 통하여 위 3억 5,000만 원을 수표(1억 원권 1매, 5,000만 원권 3매, 100만 원권 100매)로 인출한 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이하 위 수표증여행위를 ‘이 사건 제2 처분행위’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18호증, 을 제6, 7,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통하여 피고에게 합계 5억 원(= 1억 5,000만 원 + 3억 5,000만 원)을 증여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 이는 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행위에 의한 증여계약은 2022. 10. 6. 기준 이 사건 조세채권액인 457,986,2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위 457,986,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3층 전용면적 중 절반을 점유하면서 이를 주택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B은 D와 이 사건 부동산을 1/2 지분씩 상속한

다음 2000년경 웨딩홀에서 고시원으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인테리어 공사에 소요된 수억 원 가량의 비용이 필요경비 항목에서 누락되어 B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2)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는 B의 피고에 대한 금전 신탁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B이 보유한 실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는 B의 재산상태 내지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B이 2019. 3. 26.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등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이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B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거나 B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리세무서장과 노원세무서장의 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거나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 시기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338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처분행위의 상대방이 피고로 동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4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사이에 4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로 지급된 1억 5,000만 원은 그 직후 서울 강동구 I에 위치한 J 어린이수영장 강동점에 관하여 체결된 투자계약의 투자금으로 사용된 반면 이 사건 제2 처분행위로 지급된 3억 5,000만 원은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어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행위의 사해성 여부는 각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B의 무자력 여부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 처분행위 당시 무자력 여부

원고는 B이 양도소득세 448,983,430원, 지방세 44,898,343원, 개인채무 126,000,000원 등 합계 619,881,77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2019. 3. 29. 당시 B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B은 위 부동산 중 1/2 지분을 21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매매대금으로

1,236,309,719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억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2) 까지 B의 소극재산으로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이 사건 제1 처분행위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수개의 처분행위를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마지막 법률행위인 이 사건 제2 처분행위시만을 기준으로 삼아 B의 채무초과 여부에 관한 주장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제2 처분행위 당시 무자력 여부

(1)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갑 제1, 7,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9. 8. 2. B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F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3억 5,000만 원이 송금된 직후의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으므로, B이 이 사건 제2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162,224,917원(= 소극재산 619,881,773원 - 적극재산 457,656,856원)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내 용	금액(원)	내 용	금액(원)
우리은행(계좌번호 3 생략)	7,408	양도소득세	448,983,430
우리은행(계좌번호 4 생략)	254,336	지방세	44,898,343
신한은행(계좌번호 5 생략)	16,464	개인채무	126,000,000
국민은행(계좌번호 6 생략)	15,861		
국민은행(계좌번호 7 생략)	4,465		
국민은행(계좌번호 1 생략)	456,358,322		
국민은행(계좌번호 8 생략)	1,000,000		
합 계	457,656,856	합 계	619,881,773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적극재산에 관하여

피고는 B이 이 사건 제2 처분행위 당시 보유하던 ① 남양주시 K, L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② J 어린이수영장 강동점에 관한 1억 원 내지 1억 5,000만 원 상당의 투자지분, ③ G의 친부인 M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채권, ④ 그 밖의 현금 자산 등이 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B이 남양주시 K, L호에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B이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 처분행위 당시 B이 보유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구체적인 액수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않은 점, J 어린이수영장 강동점에 관한 투자계약은 피고의 명의로 체결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투자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B의 아들인 G이라는 것인 점, 위 어린이수영장의 운영자인 N와 피고 사이에서 작성된 투자계약서 제11조에 의하면 투자자는 N 및 다른 투자자들과 사이에서 합의가 성립되는 경우에만 투자지분을 양도하거나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점, 위 투자계약서 제14조(출자금회수) 제1항은 “출자투자 원금에 대한 회수는 수익배분에 의하여 회수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일방적 종료 및 해지) 제1항은 “일방의 종료 및 해지의 경우는 투자금의 50%의 양도비용만 상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수영장에 대한 투자지분은 강제집행이나 현금화의 용이성이 떨어지는 재산에 해당하는 점, B이 이 사건 제2 처분행위 당시 M에 대하여 3억 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M 명의의 각서는 B이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야 양형자료로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다), 이 사건 제2 처분행위 당시 B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현금은 소비하기 쉬운 재산으로 일반채권자들이 그 소재를

용이하게 파악하거나 이를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B의 위 적극재산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B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소극재산에 관하여

피고는 B이 1억 2,600만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 12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2019. 8. 5.에도 F의 계좌로 1억 2,6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F은 위 1억 2,600만 원을 B으로부터 이체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B에게 개인적으로 빌려 준 돈을 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B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의 계좌로 2019. 3. 28. 1억 5,000만 원을 보낸 이유에 관하여 '빚을 갚으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은 이 사건 제2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2019. 8. 2. 당시 F에 대하여 1억 2,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B의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B이 이 사건 제2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야기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B은 이 사건 제2 처분행위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초래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2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갑 제2, 3호증, 을 제7,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B의 아들인 G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피고는 B으로부터 증여받은 3억 5,000만 원을 부부공동주거지인 구리시 O, P호를 매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는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신혼집 구할 때 주신 돈이 건물3)을 판 돈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 피고의 이익, B의 공동담보 부족액 중 적은 액수를 한도로 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가산금이 포함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457,986,230원이고, 피고가 이 사건 제2 처분행위를 통하여 B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증여받았으므로 피고의 이익액은 3억 5,000만 원이 되며, B의 공동담보 부족액이 162,224,917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2 처분행위의 취소 및 반환의 범위는

162,224,917원이 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2019. 3. 29. 체결된 1억 5,000만 원의 증여계약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나, 2019. 8. 2. 체결된 3억 5,000만 원의 증여계약은 위 162,224,91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위 162,224,9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재판장 판사 오태환, 판사 조대현, 판사 김희주 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1) 개명 전 이름은 H이다.

2) 을 제15호증 제8쪽 참조

3) 이 사건 부동산을 가리킨다.